

[별표 2의3] <개정 2000.1.8>

성과상여금기준호봉표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3·별표4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5·별표6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연구관·지도관	15호봉
연구사·지도사	15호봉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8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기능1·2·3급	기능4·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10급
기능3급 20호봉	기능5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기능9급 10호봉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9·별표9의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별표 9의 적용대상	10호봉
별표 9의2의 적용대상	10호봉

5. 공무원보수교정 별표10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소방감	총경· 소방정	경정· 소방령	경감· 소방경	경위· 소방위	경사· 소방장	경장· 소방교	순경· 소방사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6.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별표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교장, 3급과장상당 또는 4급과장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5호봉
교감,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30호봉
교사,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26호봉

7. 공무원보수교정 별표13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중령	소령	대위	중위·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2호봉	9호봉	5호봉	중위 2호봉	20호봉	12호봉	12호봉	5호봉	2호봉